

제289회 임시회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전자증권법 2019. 9.16. 시행에 따른

---

#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2019. 9. .

 서울주택도시공사

# 목 차

I . 개정의 필요성 .....

II . 주요 내용 .....

III . 정관 개정(안) .....

#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## I 개정의 필요성

- 공사채 등록발행의 근거법인 「공사채 등록법」이 폐지되고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함)이 2019. 9.16.자로 시행예고됨에 따라 2019. 9.16. 이후 채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한 전자등록 발행만 가능하게 됨
- 「상법」 제478조 제3항은 “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, 이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관에 신설하여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공사 채권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- 전자증권제도 : 「전자증권법」에 따라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, 전자등록 기관(한국 예탁결제원)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 사항을 등록(발행)하여 양도, 담보설정, 권리행사 등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는 제도

※ 시행(예정)일 : 2019. 9.16.

- 기존제도와 비교

구 분	(現)기준	(新)변경
제도명칭	증권예탁제도	전자증권제도
근거법률	자본시장법, 공사채 등록법	전자증권법
적용대상	주식, 채권 등 자본시장법상의 증권	주식, 채권 등 현 예탁업무규정상의 증권
의무적용	상장증권, 집합투자증권 등	상장증권(주식, 채권), 집합투자증권
증권형태	실물증권(불소지 가능)	전자등록
예탁·반환	존재	부존재

## II 주요 내용

- 공사 정관 제35조의2(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를 신설

Ⅲ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<u>제 35조의2 (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공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.</u></p>
	<p>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◎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63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5조의2 (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공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